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2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민병덕 · 임호선 · 이강일
이인영 · 복기왕 · 김남근
전용기 · 김태선 · 이훈기
송재봉 · 김영배 · 오세희
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

[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24조제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의 사
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24條(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u>	第424條(再審請求權者)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u>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u> <u>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